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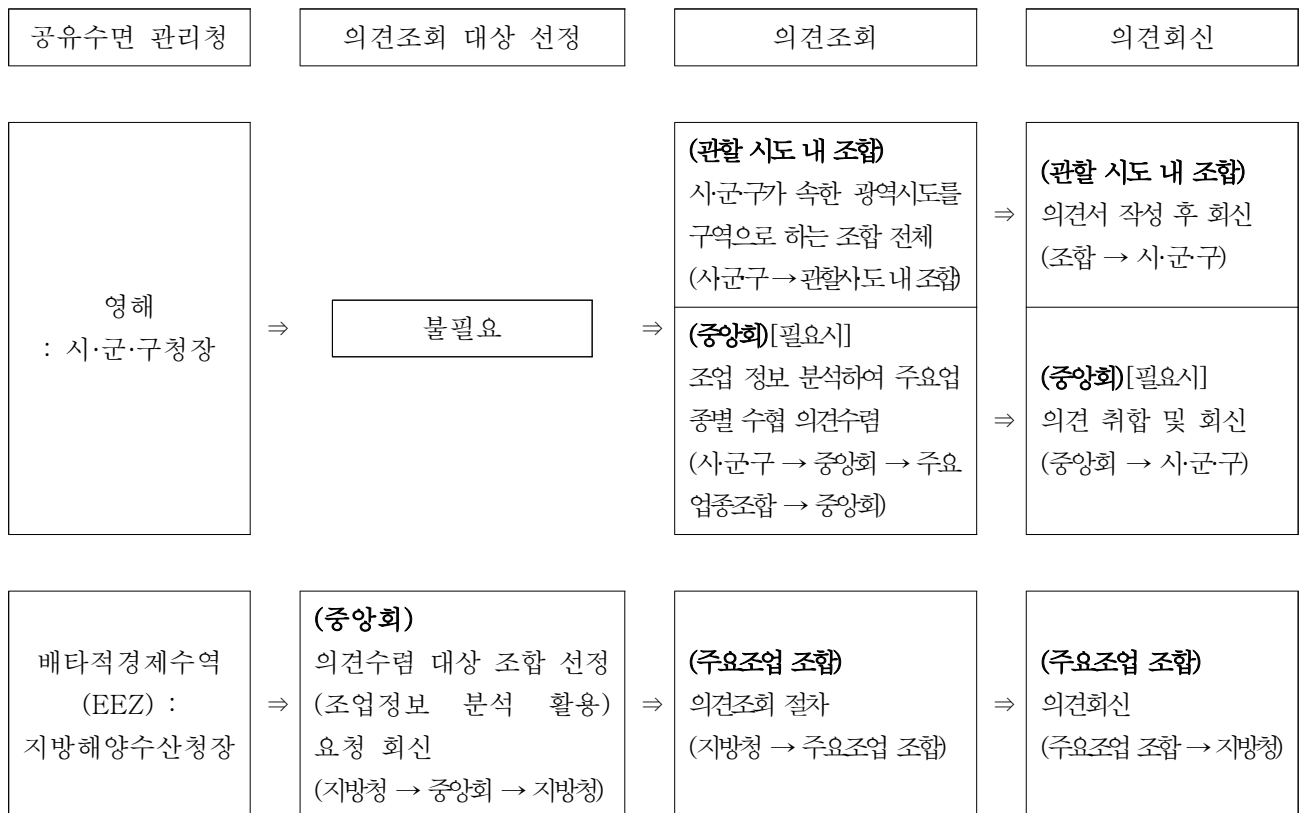
개정 공유수면법령 주요내용 및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

I. 주요내용

- 해상풍력(풍황계측기 포함) 등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전 공유수면 관리청의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(법 제8조제7항 개정, 시행령 제9조의2 신설)
 - ☞ 어선어업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 신설
- 적용대상 : '22.7.5 이후 점용·사용허가(협의·승인) 하는 경우
 - * 공유수면 관리청이 해양환경·생태계·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,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II. 의견수렴 절차

- 공고 및 어업인 의견조사 모두 실시
- (공고·열람) 관보 또는 공보, 공유수면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점용·사용허가 관련 사항 14일 이상 공고
- (어업인 의견조사)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의견조사 실시



[참고 : 주요 개정 내용]

○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
제8조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)

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·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·생태계·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,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점용·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(附款)을 붙일 수 있다.<개정 2022. 1. 4.>

○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9조의2(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)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공고 및 열람

2.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

②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공유수면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
1.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

2.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

3. 그 밖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2. 7. 4.]

○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

제14조의2(이해관계자 의견수렴)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.

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.

1.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경우

가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
나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로 인하여 소속 조합원이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

다. 그 밖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 관련 기관·단체

2.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의 경우

가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
나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시·도의 관할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

다. 그 밖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 관련 기관·단체

③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요청을 받은 자는 통보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신청지역 및 인근지역의 어업활동 현황을 분석한 후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로 인하여 소속 조합원이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정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.